

# 경기도 따복 대학생 기숙사 입주 신청서

\*강화캠퍼스 학생은 신청 불가\*

접수번호	기재 X		기재 X
인적사항	성명	정안양	생년월일 <b>2000.01.01.</b>
	대학/학과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전공	재학중 <input type="checkbox"/> 입/복학예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3학년도 1학기)
	혼인여부	미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여부 무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주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재직 현황	재직 <input type="checkbox"/> 재직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락처 <b>010-0000-0000</b>
e 메일	자주 확인 가능한 이메일로 작성바람(매월 임대료 고지서 송부받을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상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7번길 22 우편번호 ( 11234 )		
주소 (현 실거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 (평촌동, 초원대림아파트) 908동 3210호 (주민등록상주소와 현 실거주 주소지가 다른 학생만 작성, 학생생활관 거주 시 미작성)		
사유 (현재 거주 주소로 입주 신청해야 할 사유)	(ex.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사유가 있는 경우만 기재		

입주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입주신청을 요청합니다.

2022년 01월 01일

신청인 : 정안양 (인/서명)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기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본인 세대주(공급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서명(본인만 작성하면 됨)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정안양	2000.01.01.	본인	정안양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22년 01 월 01 일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귀하

## 안양대학교 복학예정 확인서

\*이 페이지는 복학 예정자만 작성!\*

\*재학생의 경우, '공유기숙사 신청일에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공고일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23년 03월)에 안양대학교 복학예정자로서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및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안양대학교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학교명	복학예정시기	주민번호
안양대학교	2023년 03월	000101-3*****

2022년 01월 01일

신청인 : 정안양 (인)

안양대학교 총장 귀하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반드시 본인 명의만 적기(부모님이나 친/인척 기재 시 심사 탈락 가능성 높후)\***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홍길동	0 0 0 1 0 1 - 1 * * * * *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7번길 22	우편번호( 11234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유의 사항 필수 참고(본인만 작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 지 아니함 <sup>2)</sup> (서명 또는 인)
본인	홍길동	0	홍길동	홍길동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들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2 년 0 1 월 0 1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정안양		생년월일	2000.01.01.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7번길 22			우편번호( 11234 )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	[임차인]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작성대상 가. 대학생 : 신청자 본인 나. 사회초년생 : 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					
2.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3.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인 : 정안양 (인)					
2022년 01 월 01 일					
<b>안양대학교 총장 귀하</b>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재 학 중 명 서

성명 :

1. 재학생의 경우,

맨 뒷장에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때, 공유기숙사 신청일과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반드시 같아야 함

생년월일 :

2. 단, 입/복학예정자의 경우,

입/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안양대학교 생활관에 따로 제출하여야 함

학부(과) :

학년 :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23년 11월 29일

공유기숙사 신청일과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안 양 대 학 교

